



사 단 「정책선도와 병원 선진화로 의료강국 실현」
범 인 **대한병원협회**

수 신 전국 병원장

참 조 보험(원무)부서장

제 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안내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-179호(2014.10.20)

2. 위 근거와 관련, 보건복지부는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2조제1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-175호, 2014.10.1.)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안내합니다.

※ 붙임 : 고시개정내역(붙임자료는 본회 홈페이지(www.kha.or.kr) / 협회업무 / 보험국 /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). 끝.

대한병원협회장



대리 유소영 팀장 정윤학 국장 류향수

시행 : 보험 제 2014-516 (2014.10.21)

우 121-737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5(마포동 35-1) 현대빌딩13~15층 대한병원협회 / 홈페이지 : www.kha.or.kr

전화 02-705-9254 전송 02-705-9259 (대표FAX : 02-705-9209) E-mail : ysy@kha.or.kr